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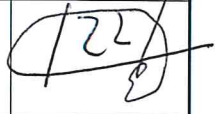
연구실 안전관리 위원회 회의

회의록

담당

위원장

이재국



일시 2015. 5. 13(수) 14:00

장소 대학본부 3층 정책자문위원회실

협조 : 시설과장



□ 안건

-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전부개정(안) 검토

□ 참석인원

- 연구실 안전관리위원 총 10명중 7명 참석

□ 회의내용

-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전부개정(안)

- 위원장 : 연구실 안전관리 위원회 상반기 1차 회의에서 개정내용에 미비한 부분이 있었으므로, 2차 회의에서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.
-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: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개정 배경 설명 및 신·구 대조표의 개정안에 대한 설명.
- 김인유 위원 : 제1조(목적) “연구실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령”을 “... 법률”로 수정하고 제2조(적용범위) 및 제3조(정의)를 순서를 변경해야 하며, 제2조(적용범위)의 제8호 “과학기술분야”는 보험가입 등의 사유로 인문 계열이 제외되어야 함으로 맞는 문구이며, 제3조(정의) 제6호 “연구실책임자 ‘라 함은를 직접 지도·관리·감독하는 교수 또는 연구책임자를 말한다”를 “.....직접 지도·관리·감독하는 자를 말 한다”로 수정해야 함, 제7호는 규정에 없음으로 삭제, 제8호의 “과학기술분야”는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음으로 삭제하고, 제12호, 제13호는 규정에 없음으로 삭제되어야 함.
- 김인유 위원 : 제7조(연구실 소속기관의 장)은 연구실 소속기관의 장은 총장을 의미함으로 삭제하거나 다른 명칭으로 수정하여야 함.
- 김인유 위원 : 연구실 소속기관의 장을 총장과 별개로 구분한 사유 설명요함.
-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: 개정규정(안)의 [별표1]의 연구실안전관리조직도에 “기관장”은 단과대학장, 연구기관장, 부속기관장으로 명시되어 있으며, 기관장의 책무를 명시하고자 하였으며, 현행규정 제7조 제2,3,4호가 총장의 책무이므로 삭제하고 표기 하였습니다.
- 김인유 위원 : 현행규정에서는 “연구실 소속기관의 장”이 총장을 의미함으로 개정규정(안)에 삭제된 2,3,4호를 현행대로 명시하고 “소속기관의 장”을 “총장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, 개정규정(안)의 제7조 제2호 “대책강구 및 보고”를 “대책 강구”로 수정하여야 함.

- 이호진 위원 : 연구실 소속기관의 장을 총장으로 하지 않으면 “부속기관의 장” 또는 “연구기관의 장” 으로 수정하고, [별표1]의 기관장을 삭제하고 연구기관장, 부속기관장을 “부속시설장” 으로 수정하여야 함
- 김인유 위원 : 제14조(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)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에서 “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” 를 추가하고 제1조(목적)의 “법령” 의 개정 내용을 현행대로 유지하여야 함
- 김인유 위원 : 제19조(보험가입)의 제5항의... “제출할 수 있다” 로 수정하여야 함
-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: 제19조(보험가입) “제출할 수 있다” 와 “제출하여야 한다” 를 “연안법” 을 검토하여 수정가능 여부 확인 하겠습니다.
- 오용식 위원 : 제19조(보험가입)의 제2항이 없음으로 항 번호를 수정하여야 함.
- 오용식 위원 : 실험실의 대학원생 안전과 관련한 교육에 대해 많이 고려해야 함
- 오용식 위원 : 학생을 대상으로 “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” 로 지정하는 것은 너무 큰 부담을 갖게 함.
- 이호진 위원 : 연구실 책임자인 담당 교수가 실험실의 책임을 지며 안전관리 담당자는 보조역할만 할 뿐 책임 소재가 없음을 설명함.
- 위원장 : 제7조(연구실 소속기관의 장)은 현행대로 하며 “연구실 소속기관의 장” 은 “총장” 을 의미하는 것으로 함
- 오용식 위원 :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이 전문지식이나 해당 분야(연구실험실)와 직·간접으로 관련부분이 적으므로 환경, 기계등의 관련분야 교수님들이 위원으로 선정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며 위원 재 선출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.
- 위원장 :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을 타 대학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조사하여 검토가 필요함.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은 금일 수정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“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” 의 개정규정(안) 검토는 마무리 하도록 함.
-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: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의 타 대학 운영상황 및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전부개정(안)의 검토한 사항들을 수정 및 정리하여 위원장 및 위원님들의 메일로 별도 보고 하겠습니다.

붙임 참석자 명단 1부. 끝.